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운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17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5월 3일

발 의 자 : 박운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우형찬·서영진·김상훈·강감창·박중화·박기열·성중기·박진형·최관술·이창섭·신언근·김태수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는 투자·출연기관을 포함한 서울시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해 공문서 등의 국어·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의 대상기관에는 투자·출연기관이 제외되어 있음

따라서 실태 조사 및 평가 대상기관에 투자·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한편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“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”를 상설화시킴으로써 동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공문서 등의 국어·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 대상기관에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)

나. 2년의 기한으로 운영되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의 운영을 상설화함
(안 부칙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·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, 대상기관은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투자·출연기관으로 한다.

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기관의 표시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·사용 중인 공공기관의 표시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5년 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실태 조사 및 평가)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·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, <u>대상기관은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로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~제2조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제6조에 따라 <u>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6조(실태 조사 및 평가)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·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, <u>대상기관은 시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 및 투자·출연기관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~제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제〉</p>

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박 윤 기